

이천시 농촌마을 개발협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서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제정 2004·10·27 훈령 제144호

개정 2007·7·2 훈령 제17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운영지침에 의하여 이천시농촌마을종합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협의회 위원은 시장, 민간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전문가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지구내의 주민대표(여성농업인 포함), 농업기반공사,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의 기관장 또는 관련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위촉한다.

제3조(위원임기 및 해촉)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시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회의) ①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기본계획안 및 실시계획안 확정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사항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비계획(주민제안서) 수립 지원
2. 사업시행단계별 사업추진계획 협의·지원
3.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지원

제6조(간사 및 서기)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농림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7·2>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비밀누설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당 등) 민간전문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